#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86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윤한홍·박덕흠·서일준

김성원 • 권성동 • 박형수

윤영석 • 박수민 • 최수진

김상훈 · 엄태영 · 김석기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은 「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,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의 정 의에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여 보훈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857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"을 "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대부금(貸付金)"이란 「독	1
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	
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	
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	
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	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	「특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	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
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	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	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
률」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	<u>한 법률」 및</u>
다.	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